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90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최은석・김종양・유용원

이종배 • 서일준 • 이인선

정희용 • 이달희 • 송언석

정연욱 · 박정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함) 기술·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실제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반면, 현행법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법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장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4 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및 제38조 의2제4항).

법률 제 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 본문 중 "2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회" 를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38조의2제4항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4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임시허가) ① ~ ④ (생	제37조(임시허가)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u>2년</u>	⑤ <u>4년</u>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u>.</u>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	
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유효기간을 <u>1회</u> 연장할 수	<u>1</u> 회에 한하여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	<u> 2년 이하의 범위에서</u>
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	
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4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u>2년</u> 이	<u>4년</u>
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